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09. 12. 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(안 제3조, 제10조).

- 분장사무 부서변경 : 기획감사실장 → 행정과장
 - 행정전산·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
- 부서 분장사무의 명확화
 - 재 무 과 : 부서의 분장사무 수정·보완
 - 민원봉사과 :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→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
 - 1010추진단 : 승강기산업 클러스터조성 →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
 - 보 건 소 : 가족계획 → 출산장려

나.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(안 제8조, 별표).

- 위치변경
 - 보건지소 : 용양면 보건지소 등 2곳
 - 보건진료소 : 거기 보건진료소 등 6곳
- 명칭변경
 - 보건진료소 : 구송 보건진료소 → 봉산 보건진료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, 제4조, 제112조, 제113조, 제114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그 밖에

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(3)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바목을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행정전산·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지방세 부과·징수, 세무조사 및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

나. 세출예산 집행·결산, 공사·용역·물품계약 및 복식부기 결산에 관한 사항

다. 세외수입 및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

라. 국·공유재산 및 물품관리, 청사 및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5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12호다목 중 “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”을 “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 중 “기업유치 업무”를 “기업유치 및 지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가족계획”을 “출산장려”로 한다.

별표 중 용양면 보건지소의 위치란 중 “노현리 217-11번지”를 “노현리 246-1번지”로, 북상면 보건지소의 위치란 중 “갈계리 1391-3번지”를 “갈계리 1433-4번지”로, 거기 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“거기리 87-10번지”를 “거기리 870-10번지”로 하고, “구송 보건진료소”를 “봉산 보건진료소”로 하며, 봉산 보건진료소(종전의 구송 보건진료소)의 위치란 중 “봉산리 571”을 “봉산리 587-13번지”로 하고, 개명 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“개명리 1621-1”을 “개명리 1621-9번지”로, 월성 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“월성리 1083-8”을 “월성리 1083-2번지”로, 지산 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“지산리 906-4”를 “지산리 905-4번지”로, 양지 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“양지리 262-1”을 “양지리 828-8번지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②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경제과장”을 “1010추진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역경제담당주사”를 “기업유치담당주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장 군 본청</p> <p>제3조(실·과·단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(본문 생략)</p> <p>1. 기획감사실장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바. 행정전산·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</p> <p><u>사항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행정과장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4. 재무과장</p> <p>가.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에 관한</p> <p><u>사항</u></p> <p>나. 경리·계약·용도 및 결산에 관한</p> <p><u>사항</u></p> <p>다.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</p> <p><u>사항</u></p> <p>라. 국·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</p> <p><u>사항</u></p> <p>마. (생략)</p>	<p>제2장 군 본청</p> <p>제3조(실·과·단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행정전산·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</p> <p><u>사항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지방세 부과·징수, 세무조사 및 지</p> <p>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세출예산 집행·결산, 공사·용역·</p> <p>물품계약 및 복식부기 결산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세외수입 및 금고관리에 관한</p> <p><u>사항</u></p> <p>라. 국·공유재산 및 물품관리, 청사</p> <p>및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5. 민원봉사과장 가. ~ 나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다. 개별공시지가 조사·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사항</p> <p>라.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사항</p> <p>마. (생략)</p> <p>6. ~ 11. (생략)</p> <p>12. 1010추진단장 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<u>송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</u>에 관한사항</p> <p>라. <u>기업유치 업무</u>에 관한 사항</p> <p>마. (생략)</p> <p>제2절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제10조(소관사무) ① (생략)</p> <p>② (본문 생략)</p> <p>1. 모자보건 및 <u>가족계획</u>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송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라. <u>기업유치 및 지원</u>-----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절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제10조(소관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출산장려</u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]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관련)			[별표]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관련)		
명칭	위치	관할구역	명칭	위치	관할구역
웅양면 보건지소	거창군 웅양면 <u>노현리</u> 217-11번지	(생략)	웅양면 보건지소	거창군 웅양면 <u>노현리</u> 246-1번지	(현행과 같음)
북상면 보건지소	거창군 북상면 <u>갈계리</u> 1391-3번지	(생략)	북상면 보건지소	거창군 북상면 <u>갈계리</u> 1433-4번지	(현행과 같음)
거기 보건진료소	거창군 주상면 <u>거기리</u> 87-10번지	(생략)	거기 보건진료소	거창군 주상면 <u>거기리</u> 870-10번지	(현행과 같음)
<u>구송</u> 보건진료소	거창군 고제면 <u>봉산리</u> 571	(생략)	<u>봉산</u> 보건진료소	거창군 고제면 <u>봉산리</u> 587-13번지	(현행과 같음)
개명 보건진료소	거창군 고제면 <u>개명리</u> 1621-1	(생략)	개명 보건진료소	거창군 고제면 <u>개명리</u> 1621-9번지	(현행과 같음)
월성 보건진료소	거창군 북상면 <u>월성리</u> 1083-8	(생략)	월성 보건진료소	거창군 북상면 <u>월성리</u> 1083-2번지	(현행과 같음)
지산 보건진료소	거창군 남하면 <u>지산리</u> 906-4	(생략)	지산 보건진료소	거창군 남하면 <u>지산리</u> 905-4번지	(현행과 같음)
양지 보건진료소	거창군 신원면 <u>양지리</u> 262-1	(생략)	양지 보건진료소	거창군 신원면 <u>양지리</u> 828-8번지	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조 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②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부의 직할(直轄)로 두고,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,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,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.

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, 군에는 읍·면을 두며, 시와 구(자치구를 포함한다)에는 동을, 읍·면에는 리를 둔다.

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, 그 밖의 지역에는 읍·면을 두되,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·면·동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>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09.8.18] [대통령령 제21689호, 2009.8.18, 타법개정]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